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12월 1일

나. 회부일자 : 2014년 12월 2일

3.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명령 등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법률 제11445호, '12.5.23.)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5. 검토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권한이 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른 현행

조례의 법적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